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1가합55524, 2022가합54566(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배당이의]

전 문

원고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상연, 박상순, 김승진, 이성하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3. 4. 13.

판결 선고2023. 5.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와 C 사이에 2020.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B와 C 사이에 2020. 8.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8909호 관련 배당액 784,291,343원을 953,217,439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8912호 관련 배당액 27,376,920원을 33,273,549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07,000,000원을 164,537,887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0,000,000원을 37,639,386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4.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811,668,263원을 1,188,668,263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07,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여신거래약정(그 내용에 관한 변경 약정이 체결된 경우는 변경된 최후의 내용을 가리킨다)을 체결하였고, E의 대표이사였던 C은 원고에게 그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E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E은 2020. 8.경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1	2013.10.18.	중소기업자금대출	427,500,000원	90,000,000원	6.186
2	2016.06.01.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원	65,000,000원	12월물 KORIBOR+12.849
3	2016.08.11.	중소기업자금대출	267,000,000원	360,000,000원	3월물 KORIBOR+12.762
4	2018.09.20.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원	360,000,000원	3월물 KORIBOR+12.768
5	2019.05.31.	중소기업자금대출	370,000,000원	444,000,000원	여신실행일 기간별 시장금리+13.1807
6	2019.09.11.	중소기업자금대출	230,000,000원	276,000,000원	월변동금리+12.796
7	2016.05.11.	외화수입신용장 관련 보증 대지급	미화 700,000달러	미화 840,000달러	-

○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F의 대표이사였던 C은 원고에게 그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F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F은 2020. 8.경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1	2019.04.26.	중소기업자금대출	50,000,000원	60,000,000원	여신실행일 기간별 시장금리+13.2684
2	2019.10.08.	중소기업자금대출	67,500,000원	12,150,000원	3월물 KORIBOR+3.025
3	2011.02.21.	신용카드계정	1,000,000원	한도 없음	-

나. 피고들 앞으로의 근저당권 설정

○ C은 2020. 8. 31. 피고 A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7,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9. 1. 제1계약에 따라 피고 A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접수 제11436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 C은 2020. 8. 31. 피고 B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20. 9. 1. 제2계약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접수 제114369호(제1계약에 따른 것과 함께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당사자들의 각 가압류

○ 원고는 2020. 10.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한 E 관련 연대보증금 1,772,749,974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8909호)과 C에 대한 F 관련 연대보증금 61,880,618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결정(같은 법원 2020카단818912호)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 A는 2021.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한 2015. 4. 30.부터 2018. 2. 28.까지의 대여금 306,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0199호)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피고 B는 2021.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한 2015. 4. 2.자 및 2016. 10. 4.자

대여금 7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0195호)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부동산임의경매절차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2021. 3. 8.로 정해졌는데, 피고 B은 2021. 2. 9. 원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피고 A는 2021. 2. 14. 원금 30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22. 3. 15. 매각되어 제1, 2계약에 따라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2. 4. 28.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있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2. 5. 4. 이 사건 2022가합54566호(병합)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A	363,846,575	8	근저당권자(2020. 9. 1. 제114369호(1) 근저당, 의정부지법 가처분 20카합5342, 20카합5376, 20카합5426)	307,000,000
피고 B	83,300,000	9	근저당권자(2020. 9. 1. 제114369호(2) 근저당, 의정부지법 가처분 20카합5342, 20카합5376, 20카합5426)	70,000,000
원고	2,054,368,956	12	가압류권자(서울중앙지법 20카단818909, 21차전243436)	784,291,343
원고	72,576,026	12	가압류권자(서울중앙지법 20카단818912, 21차전243436)	27,376,92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0, 23, 30, 32호증(이상 2021가합55524호 사건에 제출된 것),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2, 3호증(이상 2022가합54566호(병합) 사건에 제출된 것)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계약 당시인 2020. 8. 31.경 원고는 이미 C에 대하여 원고와 E, F 사이의 각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연대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각 연대보증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제1, 2계약 체결 당시 C의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한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제1, 2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1, 2계약 체결 행위는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C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 추정

채무자 C은 제1, 2계약의 체결로써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 2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이다.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합계가 이 사건 배당표 작성일인 2022. 4. 28.까지만 하더라도 2,126,944,982원(= 2,054,368,956원 + 72,576,026원)에 이르러,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받더라도 원고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부분이 제1, 2계약에 따라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 377,000,000원(= 307,000,000원 + 7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제1, 2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각 근저당권자의 지위와는 별개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대등하게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지위에 있고, 그렇다면 피고들이 근저당권자로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각 금액과 원고가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각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다시 원고와 피고들의 각

가압류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안분 배당하여야 한다. 이에 당사자별로 각 안분 배당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A	307,000,000	306,000,000	164,537,887	가압류권자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0199호)
피고 B	70,000,000	70,000,000	37,639,386	가압류권자 (의정부지방법원 2021카단200195호)
원고	784,291,343	1,772,749,974	953,217,439	가압류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8909호)
원고	27,376,920	61,880,618	33,273,549	가압류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8912호)
합계	1,188,668,263	2,210,630,592	1,188,668,261	

그렇다면 제1, 2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307,000,000원은 164,537,887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0,000,000원은 37,639,386원으로,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8909호 관련 배당액 784,291,343원은 953,217,439원으로,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8912호 관련 배당액 27,376,920원은 33,273,549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6.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오태환

판사하승수

판사정명진

별지

$$1) = 1,188,668,263\text{원} \times (\text{해당 가압류 청구금액} \div 2,210,630,592\text{원})$$